

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

소관 부서	기 관 명		농림축산식품부
	작성자	부 서 명	농촌여성정책팀
		성 명	이미영
		전화번호	044-201-1568

I.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(총괄)

□ 성별영향평가 추진 총괄표

(단위: 건)

구분		총계	법령	계획	사업*	정부홍보	
전체(=1+2+3+4)		62	50	0	12	0	
1. 제외대상		5	5	0	0	0	
평가 대상	2. 개선사항 없음	41	41	0	0	0	
	3. 자체개선안 동의	6	2	0	4	0	
	4. 개선의견	10	2	0	8	0	
	반영결과	계	10	2	0	8	0
		수 용	4	2	—	2	—
		불 수 용	1	—	—	1	—
		일부수용	5	—	—	5	—
중 단		—	—	—	—	—	
5. 기타(미완료 등)		0	0	0	0	0	

* ①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예산사업 수 : 4 건

②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비예산사업 수 : 8 건

※ ① + ②는 위 표의 전체 사업 수와 같아야 함

□ '21년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사업 중 '22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사업*

(단위: 건)

연번	성별영향평가서 상 사업명	사업유형 (단위·세부· 내역사업)	예산액 ('21년 예산, 백만원)	성인지예산서 상 사업명	사업유형 (단위·세부· 내역사업)	예산액 ('22년 예산, 백만원)
1	농촌복지증진-농업농 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 -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	내역	10,650	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 산지원-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	내역	9,560

연번	성별영향평가서 상 사업명	사업유형 (단위·세부· 내역사업)	예산액 (‘21년 예산, 백만원)	성인지예산서 상 사업명	사업유형 (단위·세부· 내역사업)	예산액 (‘22년 예산, 백만원)
2	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 지원-농식품벤처창업 활성화지원	세부	16,694	농식품벤처창업 활성화지원	세부	23,984
3	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-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-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(보육운영)	세부	7,000	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	세부	8,000
4	농촌고용인력지원-농 촌고용인력지원	세부	5,300	농촌고용인력지원	세부	11,106

* '21년 성별영향평가 사업 중 '22년도 성인지 예산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의 경우 위 비교표에 기재

☐ 총평

○ 주요실적 및 성과

- 「성별영향평가법」에 따라 '21년에 총 62건의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여 법령 및 정책수립 시 성차별적 요인을 사전에 방지 노력
 - 평가대상 : 제·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안 50개, 주요 사업 12개
- 성별영향평가 관련 교육 이수
 - 성별영향평가 총괄실무담당자 및 관리자과정 교육이수('21.2.26., '21.3.17.)
 - 부내 직원 대상 온라인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실시(60명 이수, '21.4.15.)
 - 밀레니얼 사무관을 위한 성인지 교육 이수 ('21.11.08.)
 - 성별영향평가 워크숍 참석('21.11.12.)

○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우리부 성평등 실행 목표 달성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성별영향평가를 내실있게 추진
- 성인지 교육 내실화
 - 성인지교육 및 성별영향평가 과제담당자 교육 시 부처방문 등 교육 제공 방식 개선 및 적극 홍보
 - 성별영향평가의 파급력 및 우수사례안내, 질의응답 등 실무자의 개선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실시 필요
- 성별영향평가 대상 법령 및 주요사업의 성차별요소 분석시 컨설턴트와 해당 사업 담당자간의 소통 필요

II. 정책개선 현황(반영결과가 수용/일부수용 과제)

* 이행실적은 구체적으로 기입(예, 이행 공문번호, 이행 일자 및 장소, 이행 인원수, 이행내용이 수록된 보고서명,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명 및 url 등, 이행된 자료가 공개자료가 아닐 경우, 지역성별센터에 별도 송부)

순 번	관리번호	법령/계획 /사업/홍보명	성별영향평가 실시 전 해당내용	성별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안	개선안 이행실적	진행현황 (완료/진행중)
1	2014A 농 림046	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 칙	○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구 성시 15인 이내 관련 전문가로 구성	○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구 성시 성별을 고 려하여 15인 이내 관련 전문 가로 구성	○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여성비율 40%	완료 (위원회 구성, '20.4.17)
2	2020A 농 림061	식생활교육지 원법 시행령	○제5조의2(실무위 원회) ① 생략 ② 실무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 원 중에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,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이 된다. 1. 생략 2. 식생활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임명 하거나 위촉하 는 사람 ③ ~ ④ (생략)	○제5조의2(실무 위원회) ① 생략 ② 실무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 원 중에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,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이 된다. 1. 생략 2. 식생활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에 서 농림축산 식품 부 장 관 이 성별을 고 려하여 임명 하거나 위촉 하는 사람 ③ ~ ④ (생략)	○개 선 권 고 안에 따라 반영	완료 (21.12.14.)
3	2020A농림 072	농약관리법	○제14조의3(농약 안전성심의위원 회의 설치 등) ① ~ ② (생 략)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 장 각각 1명을 포 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④ ~ ⑥ (생 략)	○제14조의3(농약 안전성심의위원 회의 설치 등) ① ~ ② (생 략)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 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 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④ ~ ⑥ (생 략)	○행정안전부 협의 결과에 따라 농 약안전성심의위 원회는 개정안에서 삭제(단순 심의 의결기구)는 행정 안전부에서 시행 령에 규정하도록 권고, 반영 불 필요	완료 (21.6.15) 1. 부처 협의결과 개정안에서 제외 2. 법률 개정 완료 (21.6.15)
			○제23조의5(조정 위원회의 구성	○제23조의5(조정 위원회의 구성	○제23조의5(조정 위원회의 구성	

순 번	관리번호	법령/계획 /사업/홍보명	성별영향평가 실시 전 해당내용	성별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안	개선안 이행실적	진행현황 (완료/진행중)
			등)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.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④ ~ ⑩ (생략)	등)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.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④ ~ ⑩ (생략)	등)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.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되, 성평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	
4	2020C농림007	스마트농업육성-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	○ (성과지표)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여성기관홍보추진(건)	○ 성평등 목표를 반영한 성과지표 마련 - (예)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선발자 중 여성 교육생 비율(%) 또는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지원자 중 여성 비율(%)	○ 평가의견을 반영한 성과지표는 '21년에 반영	완료 (21.1.)
5	2021A농림005	스마트농업육성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	○ 제8조(실태조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수립 등 스마트농업육성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스마트농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	○ 제8조(실태조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수립 등 스마트농업육성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스마트농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②③④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,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○ 하위법령 마련시 실태조사, 인력양성 등에 있어 성평등 관점을 반영	진행 중 (법률 제정안 규제심사 종료, 법제처 심사중)
6	2021A농림033	해외농업·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정안	○ 제6조(해외농업자원개발 및 국제농림협력심사)	○ 제6조(해외농업자원개발 및 국제농림협력)	○ 개선권고안에 따라 반영	진행 중 (법률 제정안 규제심사 종료, 법제처)

순 번	관리번호	법령/계획 /사업/홍보명	성별영향평가 실시 전 해당내용	성별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안	개선안 이행실적	진행현황 (완료/진행중)
			회) ①생략 ②심의회는 위원 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	심의회) ①생략 ②심의회는 위 완장 1명을 포 함한 30명 이 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 하여 구성한다		심사중)
7	2021C 농 림001	스마트팜 청년창 업 보육센터스마 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스마 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(보육운 영)	○사업대상, 성별 수혜자 등의 통 계 미산출 - 여성 참여율 제 고를 위해 교육 생 모집시 여성 기관단체를 대 상으로 홍보 강 화	○성별 수혜율을 분석할 수 있도 록 사업 대상 및 사업 참여 자에 대한 성별 분리통계 생산 관리 ○홍보 강화와 아 울러 여성 교 육참여자를 대상 으로 참여 경로 및 동기, 애로사 항 등을 조사해 실질적인 여성 참여율 제고방 안 마련	○사업 참여자에 대산 성별 분리 통계 생산·관리 ○전체 교육 참여 자를 대상으로 참여 경로 및 동 기, 애로사항 등 을 조사하여 사 업 추진시 반영	완료 (‘21.9)
8	2021C 농 림004	농촌지역개발농 특) 농촌공동체 활성화지원-농 촌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	○본 사업 시행기 관인 농어촌회 망재단의 각종 양식에 성별 항 목 기입란 부재 - 여성의 참여율은 높으나, 프로 그램 개발·운영 역량부족, 남성 참여율 저조	① 성별 참여현황 파악을 위한 양식 개선 -사업신청서, 사 업계획서,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양식 중 주민공 동체 인원 구성, 공동체 대표, 사전 수요 조사 결과 등에 성별 표기 추가 필요 ② 지원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필요 - 여성농업인 역량 개발 프로그램, 남 성 농 업 인 참여 프로그램, 남녀와 도농민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프로 그램 등	○사업신청서 및 결 과보고서 내 주민 공동체 대표·인원 에 대한 성별표기 추가 ○우수사례집 발간 및 공동체우수사 례에 대한 성과 발표 등 사례 발 굴과 홍보, 남성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 한 프로그램확대	완료 (‘22.1.)
9	2021C 농 림006	농촌고용인력지 원-농촌고용인	○ (성과지표개선) 여성 농가주 지원	① 여성 농가주 수혜율로 변경	○ 성과지표 개선 방안	진행중 (일부수용,

순 번	관리번호	법령/계획 /사업/홍보명	성별영향평가 실시 전 해당내용	성별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안	개선안 이행실적	진행현황 (완료/진행중)
		력자원	실적	필요 - (1안) 전체 여성 농가 대비 여성 수혜 농가 - (2안) 농촌인력 중개센터에 농작업자를 신청한 여성 농가 대비 수혜를 받은 농가	- (현행) 여성 농가주 지원 실적 - (여가부 안) 여성 농가주 수혜율로 변경 필요 - (농식품부 안) 인력중개센터 전체 농작업 참여자 대비 여성 농작업 참여자 중개 비율 상향 ○ 개선 사유 - 농가주의 성비는 남성 비율이 80% 정도에 이르는 등 남성으로 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동일 가구의 여성 세대원도 같이 농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농가주에 대한 지원도 여성에 대한 동일한 지원 효과로 볼 수 있음 - 또한, 여성단독 농가의 경우 대부분 소농으로 고용인력 수요가 낮은 점 고려할 필요 - 따라서, 성과 지표로 여성 농가주 수혜율이 아닌 전체 농작업 참여자 대비 여성 참여자 중개 비율을 상향시키는 것으로 지표 수정 요청 - 아울러, 사업 시행지침 상 취약계층*에 대한 인력중개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음 * 고령농, 여성 단독 농가 등	대안제시)

순 번	관리번호	법령/계획 /사업/홍보명	성별영향평가 실시 전 해당내용	성별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안	개선안 이행실적	진행현황 (완료/진행중)
			○ (사업지침개선)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시행지침 사업결과보고서식은 수요대비 수혜자산출이 어려움(p19) - 실적 총괄표 : 수요자 모집농가수, 영농작업반 구성원, 중개실적만 포함	② 수혜율 파악을 위해 사업 지침 사업결과보고서식에 수혜 농가 추가 - 실적 총괄표에 수혜 농가수 포함(남, 여 구분)	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'22년 시행지침 결과보고서식에 인력중개 수혜 농가가 기입되도록 서식 변경	
10	2021C 농 림007	농식품벤처창업 활성화지원-농 식품벤처창업활 성화지원	○ 사업대상자 대비 수혜자가 불균형적임 * 수혜율 분석 시 사업대상자 범위를 전체 경제활동인구로 설정	○ 사업대상자의 범위를 사업과 관련된 사람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상별수혜분석의 실효성 제고 * (예시) 사업 대상자를 농식품벤처육성지원사업 모집 공공 지원한 벤처창업자, 수혜자는 지원받은 벤처창업자로 설정	○ 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'농식품벤처창업육성지원사업' 지원자로 설정하고 수혜자는 지원사업 선정자로 설정	완료('22.1)
			○ 성평등 조치사항으로 지원 선정된 농식품 벤처창업자의 성비분석을 계획	○ 단순 성비분석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기초한 성별격차의 원인분석과 격차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	○ '농식품벤처창업육성지원사업' 대상자 모집 시 여성관련 단체 및 유관 기관 등 안내	
11	2021C 농 림009	농산물유통개선 (농특-발작물산 업육성)	○ 현행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시행지침에 성별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없음 신청서에는 성별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없음.	① 상별 통계 생산을 위한 사업시행 지침 서식 변경 -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및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계획서(별지 제2호 서식) 변경 (예시①) 제1호 서식 관련 - 신청조식에	○ 해당 사업은 매년 하반기에 익년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'22년도 지침을 근거로 현재사업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중으로 지침 변경 불가 - '23년도 지침 개정시 여성참여율 및 대표성방안을 추가 분석('22년 상반기 중)	진행중 ('22년)

순 번	관리번호	법령/계획 /사업/홍보명	성별영향평가 실시 전 해당내용	성별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안	개선안 이행실적	진행현황 (완료/진행중)
				서 대표자명 옆에 성별 기입 칸 추가 (p.17) - 신청조직 세부 현황에서 종업 원수, 조합원수, 출 자 자 수 를 '계, 남, 여'로 구분하여 기입 하도록 변경 (p.18) (예시②) 제2호 서식 관련 - 참여농가 실적 표에서 농가수 및 생산·조직 화 실적 표의 조직화 농가 수를 각각 '계, 남, 여'로 구분 하여 기재하도 록 변경(p.23) - 참여농가 실적 표에서 농가수 및 생산·조직화 부문 표의 조직화 농가수를 각각 '계, 남, 여'로 구분하여 기재 하도록 변경 (p.24) - 농가 조직화 교육 및 컨설 팅 표에서 교 육인원을 '계, 남, 여'로 구분 하여 기재하도 록 변경(p.28) - 주산지협의체 운영 표에서 위원장 및 위원 의 성별 기입 칸 추가(p.29) - 통 합 마 케 팅 조직 개요 표 에서 대표자명 옆에 성별 기입 칸 추가(p.33)	후 반영('22년도 상반기 중)여부 검토	
			○ 현재 발작물공동 경영체 관련 성별 현황 자료는 찾	② 여성 참여율 및 대표성 제고 방안 모색	○ 여성 참여율 및 대표성 제고 방안으로 인센	

순 번	관리번호	법령/계획 /사업/홍보명	성별영향평가 실시 전 해당내용	성별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안	개선안 이행실적	진행현황 (완료/진행중)
			아보기 어려우나, 농업법인과 농협조직 등 성별 통계가 구축되어 있는 자료들을 참조해볼 때 여성 농업인은 남성에 비해 생산자 조직 참여율과 대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* 참조: 농림축산식품부(2021) 여성농업인 정책자료집, 농림축산식품부·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(2021), 2019년 기준 농업법인조사보고서	- 지원대상 인센티브 항목에 ‘여성 참여율’ 추가 * (예시) 여성이 대표인 생산조직비율 30% 이상, 여성참여율이 40% 이상인 조직 등 -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 구입 시 성별 수요조사 실시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 우선 구입 등	티브 항목에 ‘여성 참여율’ 추가 사전 검토 필요 - 다만, 해당 사업은 품목과 농협 등 산지조직 경영체별 특성이 다양하며, 여성만을 고려한 사업을 우대하여 추진하기는 어려운 현실임을 고려할 때 그간 참여한 경영체 선행 분석 후 반영 여부 최종 검토 - 향후, 선정 평가 및 사업계획서 심의 시 여성 참여율이 높은 품목 경영체에 대해 여성친화형 농기계 우선 구입 권고 등 조치 검토	
12	2021C 농림010	농촌지역개발농특(농촌계정)-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	○ '21년 하반기 입주 대상자 모집 예정으로 현재 수혜자 통계 산출 불가	① 성별 분리 통계 구축 필요 - 입주자 확정 후 입주 신청자, 사업 수혜자 등에 대한 가구유형별 통계 세분화하여 구축 필요, 특히 1인가구 성별 분리 통계 필요 * 신혼부부 비혼 등 1인가구, 자녀양육가구 등 - 사업수행기관별 결과보고서 서식에 인적 통계와 관련된 사항은 ‘계 남, 여로 구분하여 가계소득 양식을 점검하고 성별 통계 구축 관리	○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 성과평가 시 4개 지구별 입주신청자, 수혜자 등 유형별(가구유형, 성별 등) 세분화하여 통계 구축	완료 (‘21.9)

순 번	관리번호	법령/계획 /사업/홍보명	성별영향평가 실시 전 해당내용	성별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안	개선안 이행실적	진행현황 (완료/진행중)
			○ 그간 젊은 귀농 귀촌 여성들은 정주여건 불편, 일상적 불안진, 소통 부족, 자녀 돌봄 여건 미비 등 호소	②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개선 방안 모색 필요 - 만족도 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가구 유형별 특성 및 성별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 모색	○ 사업 성과평가 시 사업수혜자 유 형별(가구유형, 성별 등) 입주 과정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 사 후 보급자리 시설 운영 시 개선방안 도출	
13	2021C 농 림011	농산물유통개선 (농안기금)-농식 품유통 교육훈련	○ (성과지표개선) 여성 교육생 비율(%) - '21년 목표치 22.6%(%) * '19년 실적 19.4% '20년 실적 32.0%	○ 적극적인 목표 치 설정 필요 - 전년 실적보다 상향 설정 필요	○ '22년 목표치 상향 설정 - 최근 3개년 평균 (24.2%) 및 교육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'21년 목표치(22.6%) 보다 7.4%p 상향하여 30% 로 설정 * '20년은 코로나로 인한 교육인원 감소 및 온라인 교육 등의 영향 으로 32% 실적 을 달성하였으나 특수한 여건임을 감안하여 3개년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	완료 ('21.12.)
			○ 교 육 과 정 별 여 성 참 여 율 미제시	○ 교육과정별(일 반교육/전문교 육) 성별 참 여율 파악 및 교육과정 수요 조사 결과 등 을 반영하여 성별 격차 해 소방안 마련 * 전문교육 자 부담 50%는 경제력이 약한 여성의 참여저 해요인이 될 수 있음 * 수요조사 시 교육비 부담, 교육방법(온/	○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개선 - 향후 교육계획 수립 시 성별 참여율 파악 및 교육과정 수요 조사 결과 등 반영 - 온-오프라인 등 교육방식에 대 한 성별 선호도 차이를 분석하 여 세부 교육과 정시 반영 - 교육과정은 교육 기간에 따라 일반 (단기), 전문(6 개월 이상 장기) 과정으로 구분	

순 번	관리번호	법령/계획 /사업/홍보명	성별영향평가 실시 전 해당내용	성별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안	개선안 이행실적	진행현황 (완료/진행중)
				오프 선호도 등에 대한 성별 차이 조사 필요	되어 각 기간에 맞는 교육비가 산정된 것으로 전문교육에 대한 자부담을 성별로 구분하여 교육비 부담여부를 조사 하거나 성별 교육비 차이를 두는 것은 곤란	

III. 자체개선 이행결과

* 이행실적은 구체적으로 기입(예, 이행 공문번호, 이행 일자 및 장소, 이행 인원수, 이행내용이 수록된 보고서 명,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명 및 url 등, 이행된 자료가 공개자료가 아닐 경우, 지역성별센터에 별도 송부)

순번	관리번호	법령/계획 /사업/홍보명	성별영향평가 실시 전 해당내용	성별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안	개선안 이행실적	진행현황 (완료/진행중)
1	2020A농 림031	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	○ 별표 4(농어 촌관광휴양지 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) 제2호 가.~사.(생 략) <신 설>	○ 별표 4(농어촌 관광휴양지사 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)제2호 가.~사.(생략) 아. 농어촌민박사업 자가 「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」,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, 또는 「아동·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 하여 관계 행정 기관의 장으로 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함	○ 자 체 개 선 안 동의	완료 (‘21.10.15.개정)
2	2020C농 림008	농림행정통계 체계 구축-스 마트농정 통 계체계 구축- 팜맵구축 사 업	○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	①-1 (자체개선안 동의) 통계구축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여성 참여율 30% 이상 ※ 단, 「양성평 등기본법」 제21 조제2항은 위촉 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	○ 자 체 개 선 안 동의	진행중

순번	관리번호	법령/계획 /사업/홍보명	성별영향평가 실시 전 해당내용	성별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안	개선안 이행실적	진행현황 (완료/진행중)
				분의 6을 초과하 지 않도록 규정하 고 있으므로, 여 성참여율을 40% 까지 높이는 방 향으로 검토 필요 ※ (부 대 의 견) 팜맵을 통해 각종 시각화 자료 및 통계제공이 활성화 된다면 콘텐츠 별로 성별 구분 현황을 제시하고, 통계의 성별구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		
3	2021A농 림003	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 업인 육성지 원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	○ ‘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 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(2021.5.20.시행) 시행규칙은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	○ 후계농어업 경 영인등 선정 시 여성 및 다문화 가족 구성원을 5분의 1 이상 선정(안제2조 등)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특성 반영, 성별통계 구축,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 개선안에 동의	○ 자 체 개 선 안 동의	완료 (21.9.30.)
4	2021A농 림026	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	○ 「농 어 촌 정 비법」이 개정 (‘19.12.10, ‘21.4.13.)에 따라 농어촌 민 박 사 업 자 단체가 농어 촌민박사업자 교육 운영주 체로 추가되 어 교육 방법· 절차 등 필요 한 사항을 정 하고, 불법카 메라 등 설치 및 성폭력처 벌법 등을 위	○ 불 법 카 메 라 등을 설치한 농어촌 관광 휴양지 사업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 준 신설로 성 관련 범죄억 제에 기여	○ 자 체 개 선 안 동의 - 별표4 제2호 마목	완료 (‘21.10.15.시행)

순번	관리번호	법령/계획/사업/홍보명	성별영향평가 실시 전 해당내용	성별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안	개선안 이행실적	진행현황 (완료/진행중)
			반한 농어촌 민박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·사업장폐쇄의 처분기준을 마련			
5	2021C농림002	농생명자원사업육성-도시농업활성화-도시농업교육인력양성지원	○ 남성 참여율 제고가 필요한 사업으로 성별 격차 해소책 마련이 필요	○ 자체개선안 동의 -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교육기관에 대한 사후 평가 시 남성 강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기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차년도 선정 시 우대 가점 항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	○ 자 체 개 선 안 동의	완료 ('21.12)
6	2021C농림003	농업정책보험-농업인안전재해보험-농업인안전보험	○ 가입률 제고를 위한 상품개선 지속 추진	○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상품개선 지속 추진	○ 사업의 성별 격차는 없으나 정부는 여성 농업인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'부부형 상품' 및 여성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재해골절 '특약상품' 등을 여성조합원 대상으로 적극 홍보	완료
7	2021C농림005	농촌복지증진-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-지역단위푸드플랜구축지원	○ '20년 부터 '로컬푸드지수' 평가 지표에 여성농 참여비율을 반영	○ '로컬푸드 지수'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, 소비자단체와 함께 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관심 제고	○ 자 체 개 선 안 동의	완료 ('21.9)
8	2021C농림012	식품산업육성(농안)-전통발효식품육성	○ 사업 예산은 사업 목적에 따라 대상, 범위 등이 검토되는 사항으로 여성대표자 기업에 사업 예산을 우선배정하기 어려움	○ 전통식품 유통·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, 여성대표 기업 가점 반영 등 지침 개선	○ 자 체 개 선 안 동의	진행중 ('22년 상반기)

IV. 미이행 과제 현황 : 해당없음

V. 특정성별영향평가

○ (중앙행정기관 작성 양식)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현황

순번	연도	과제명	권고 내용	반영결과	진행현황 (완료/진행중)
1	2016	16-3-1	○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에서 ‘모성보호’ 개념을 사용한 제1조, 제3조, 제5조, 제11조, 제13조의 해당부분을 ‘모성권 보장’으로 변경	○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개정 완료(18.12.24)	완료
2	2016	16-5-3	○ 초청연수 프로그램에 젠더 관련 교과목 추가	○ '18년 시행한 ODA사업 (5개)에 대한 초청연수 프로그램에 젠더 관련 교과목 추가 반영하여 실시함(연중) * 국가 및 과목명 · 르완다 : 양성평등교육 · 우즈베크 : 양성평등교육 · 미얀마 : 양성평등과 성 주류화 · 우간다 : 국제농업농촌 개발사업에서의 젠더의 중요성 · 에티오피아: 성평등의 이해	완료 (사업종결)
3	2016	16-5-4	○ 농촌종합개발 ODA사업에 대한 성인지 통계 생산	○ '19년 추진한 사업에는 농촌종합개발분야 ODA 사업이 없어 향후 관련 사업 발굴 시(해당 사업 의 경우 신청이나 수요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) 성 인지 통계를 생산하겠음 * '19년 신규 ODA사업의 경우 농촌종합개발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성과지 표에 성별통계 반영 곤란	완료 (사업종결)
4	2017	17-1-1	○ 「농약 등의 안전사용 기준」에 방제복 착용 규정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	○ '20년 작물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 시행 (76개소, 3,800백만원) -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, 전문가 컨설팅 - 방제복, 안전화, 방독 마스크 등 안전장비 보급, 안전관리 교육 등 - 방제복 착용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‘농업인 안전관리’ 책자제작 및	완료

순번	연도	과제명	권고 내용	반영결과	진행현황 (완료/진행중)
				농진청에서 해당교육 시행	
5	2017	17-1-2	○ 여성농어업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-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여성 농어업인을 농약 등 위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확보 사업·제도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 마련	○ 「여성농어업인육성법」에 '안전' 개념을 반영하여 '21년 개정 추진	완료 (21.11.30)
6	2017	17-1-5	○ 여성농업인의 농약 안전 사용에 관한 마을단위 시범사업 개발 및 관련 정책 사업 추진	○ '20년 작물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 시행 (76개소, 3,800백만원) -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, 전문가 컨설팅 - 방제복, 안전화, 방독 마스크 등 안전장비 보급, 안전관리 교육 등	완료
7	2017	17-11-1	○ 6차산업 인증제 참여 사업자(대표자) 및 사업 참여자(종업원) 등의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것	○ 이해관계자의견 수렴결과 - 11개 시도 지원센터장 의견 수렴 ('18.8.23), 지원센터 서면 의견 수렴('18.8.24~31), 전문가 의견 청취('18.9.6) - 고용구조 파악을 위한 성별조사가 필요할 경우 인증자료를 활용하여 작성기로 함('18.9.17) - 자체 성과관리시스템에 인증제 참여자 성별 및 연령 통계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('19.12)	기타 (이행불요)
8	2017	17-11-2	○ 여성의 6차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인증제 기준 개선 *(예시) 6차 산업 인증 심사 기준에 여성 일자리 창출 기여도 반영, 대표자가 여성 이거나 구성원의 여성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등	○ 이해관계자의견 수렴결과 - 11개 시도 지원센터장 의견 수렴 ('18.8.23), 지원센터 서면 의견 수렴 ('18.8.24~31), 전문가 의견 청취('18.9.6) - 여성농업인 참여가 높은 상황(49.5%)에서 가점 부여는 정부가 나서서 양성평등 정책을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'현행 유지' 하기로 결정(9.17) ○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의 인증 제도 취지에 미부합 - 여성참여도는 지역농산물	기타 (이행불요)

순번	연도	과제명	권고 내용	반영결과	진행현황 (완료/진행중)
				활용도, 농촌지역 소재 여부 등 농촌지역활성화 연관성 미흡	
9	2017	17-11-3	○ ‘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사업’의 여성 농업인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, 여성 농업인 대상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발굴할 것	○ 농촌진흥청 소관사업으로 해당 없음	기타 (소관 변경)

※ '12~'19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권고에 대해 부처가 수용한 과제 중 미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기재

VI. 정책개선 우수사례

순번	1	정책명	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
관리번호	2020A농림031		
주요 내용	○ 성폭력처벌법·성매매처벌법·아동청소년법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받은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추가하기 위해 자체개선안을 마련 －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○ [별표4]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(제51조 관련) 제2호 가.~라.(생략) ＜신설＞ 마. 법 제 86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자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,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		
주요 정책개선 내용	○ 성폭력처벌법·성매매처벌법·아동청소년법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받은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추가('21.10.) － 성폭력 및 아동폭력 등에 대한 제제기준을 추가하여 농촌지역 소외계층 보호 및 시설 관리강화 등 민박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		

순번	2	정책명	여성농어업인육성법
관리번호	17-1-2		
주요 내용	○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 농어촌 내 양성평등 실현 및 농작업·생활환경에서의 안전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추가하고, 양성평등의 증진과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		

	-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령안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~5.(생략) <신설> 6. "양성평등"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,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.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"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"를 "개선,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"로 한다. 제3조의2(여성농어업인의 날) <신설> ① 여성농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한다. 제10조제1항(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) <신설> 5. 농어업·농어촌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관련 인력 육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, 지위 향상, 모성권 보장,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·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 제11조(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,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 1~4. (생략) <신설> 5.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6.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
주요 정책개선 내용	○ 현행법의 목표, 책무, 기본계획 등에 양성평등의 증진과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,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 -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등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어촌 사회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